



---

# 2024년 인권경영 종합 보고서

---



[기획감사실(청렴감사팀)]

# 목 차

1. 인권경영 추진 개요 .....	1
2. 인권경영체계 및 인권정책선언 보고 .....	2
3. 인권영향평가 관련 보고 .....	6
4. 구제절차 관련 보고 .....	12
5. 인권경영 교육 관련 보고 .....	16
6. 인권경영 종합평가 .....	18

# 2024년 부천도시공사 인권경영 종합 보고

## I 인권경영 추진 개요

### 1 추진배경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공기업·공공기관(공기업)은 인권경영보고서 공시 필수
- 공사 스스로 인권경영을 점검할 기회를 갖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보 공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추구

### 2 관련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2018. 9.)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2022. 7.)
-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25조(인권영향평가) 적용

### 3 인권경영 보고 주요내용

#### 주요내용

“지침에 따라 인권경영 보고에 담아야 하는 사항<발췌>”

가. 인권경영 추진 체계 및 인권정책선언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권경영 관련 규정의 목록과 주요 내용</li><li>▶ 인권경영 책임자,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시</li><li>▶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여부, 역할 및 구성 원칙</li><li>▶ 국제인권기준 지지를 담은 인권정책선언 내용</li><li>▶ 인권정책선언 제정 과정 및 확산 노력</li></ul>
나. 인권영향평가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당연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실시과정</li><li>▶ 인권영향평가 결과로써 식별된 주요 인권 이슈</li><li>▶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대응 계획 및 대응 성과</li></ul>
다. 구제절차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권침해 구제절차</li><li>▶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li><li>▶ 해당연도 구제절차 운영성과(접수건수 및 내역)</li><li>▶ 사건의 처리 절차와 결과, 미해결 사건의 향후 대책</li></ul>
라. 인권경영 교육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관의 인권경영 교육체계(규정, 전담부서, 담당자)</li><li>▶ 인권경영 교육 주제 선정 과정</li><li>▶ 관리자 및 현원 대비 교육 참여율 등 교육 운영성과</li></ul>
마. 종합적 평가, 공개의 원칙 및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해관계자 참여 등 종합적 평가 도출 과정</li><li>▶ 인권경영 보고가 외부 이해관계자에 공개된 방법</li><li>▶ 보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평가 등 소통 결과</li></ul>

## 1 인권경영 체계 마련

단계별추진	내 용	기간
1. 인권경영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li> <li>▶ 인권경영 정책 선언 및 공표</li> </ul>	2018년 ~ 지속 추진
2. 인권영향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li> <li>▶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검토</li> <li>▶ 최고경영진 보고 및 평가 결과 대내·외 공유</li> </ul>	2019년 ~ 지속 추진
3.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li> <li>▶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li> </ul>	
4. 구제절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절차 수립, 운영 및 전파</li> </ul>	

## 2 인권경영 관련 규정 목록 및 주요 내용

규정 목록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인권경영규정의 목적
	제2조(정의)	인권,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의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조(고용상의 비차별)	성별, 학력 등 비차별
	제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단체교섭 권리 보장
	제5조(직원인권 보호)	인격권, 휴식권 등 보호
	제6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금지
	제7조(산업안전보장)	건강한 근무 여건 조성
	제8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현지주민 인권침해 유의
	제9조(환경권 보장)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제10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유의
	제11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 금지
	제12조(구제조치)	인권침해 대응, 구제조치 이행
제3장 인권경영 체제	제13조(인권경영 현장)	인권경영현장 선포 및 실천
	제14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경영 실행전략 등 계획 수립
	제15조(인권경영 담당부서)	인권경영 담당 부서 운영
	제16조(인권교육)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제4장 인권경영 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인권경영위원회 수행 기능
	제18조(구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
	제19조(소집 및 회의)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제20조(수당 등)	참석수당 등 지급
	제21조(의견청취)	회의안건 관련자 의견 청취
	제22조(이익 충돌 회피)	특정 안건의 이해관계자 배제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관련 비밀 누설 금지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지)	품위 손상 등 해촉 사항

제5장 인권영향 평가	제25조(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인권침해 신고 방법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인권침해행위 처리 방법
	제29조(신고의 취하)	신고자의 신고 취하 방법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종결)	인권침해행위 종결 사유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의 신분보장
	제32조(인권침해여부에 관한 상담)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과의 상담
	제33조(시정과 조치)	인권침해 사항 시정 및 조치

### 3 인권경영 조직 운영 체계

구분	대상	내용
인권경영 최고 책임자	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총괄</li> <li>▶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li> </ul>
인권경영 위원회	내·외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자문</li> <li>▶ 인권경영 운영 실태 및 인권영향평가 심의</li> </ul>
인권경영 담당부서	청렴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관련 업무 총괄 및 인권경영체계 운영</li> <li>▶ 책임자/ 담당자: 청렴감사팀장, 인권경영 담당자</li> </ul>
인권지킴이	부서별 인권경영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행 조직</li> <li>▶ 부서별 인권경영 업무 전담, 교육, 캠페인 등 활동 추진</li> </ul>

### 4 인권경영위원회

- **위원회 목적:**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 설치
- **위원회 역할:**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인권경영 관련 계획·정책·제도에 대한 자문,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심의
  -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 실천사항 점검
- **구성원칙:**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 인권 증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외부위원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내부위원은 각 본부의 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구성현황: 총 7명(외부 4명, 내부 3명)**

구분	성명	분야	비고
외부위원 (4명)	박○○	노사전문가	공개채용
	최○○	시민운동가	
	김○○	교수	
	김○○	교수	
내부위원 (3명)	이○○	경영전략(본부장)	당연직
	이○○	도시개발(본부장)	
	강○○	시설운영(본부장)	

**5 주요 개선사항**

□ **인권경영규정 일부개정**

- 인권경영위원회 수행 업무 명확화(인권침해행위 → 인권침해 행위 조사 및 구제 심의)

□ **인권영향평가 시 개선사항**

- 주요사업 변경: 3개 사업(개발&주차&체육) → 3개 사업(교통&개발&체육)
- 국가인권위원회 지침에 따른 중대성 평가 신규 실시
- 인권경영실천협의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상호 교차검증

□ **인권경영 문화 확산**

- 인권경영실천협의체 정기회의 실시 및 3개 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 공정무역 티파티 행사, 부천시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참석 등

□ **인권경영시스템 재인증**

- 인권경영의 체계적·객관적 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재인증 추진
- 인권 존중문화 성숙도 평가, 내부심사, 경영검토 보고, 현장심사 등

□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 인권지킴이 정기회의, 인권독서토론회, 청렴·인권 골든벨 행사 등

□ **인권현황 실태점검을 위한 전 직원 설문조사 실시**

- 인권 및 갑질 인식 점검, 인권침해, 구제 노력 평가 등 27문항

□ **인권침해 구제 절차 및 구제 매뉴얼 수립**

- 인권침해 구제 절차 및 구제 매뉴얼, 갑질 유형별 대응 매뉴얼 수립·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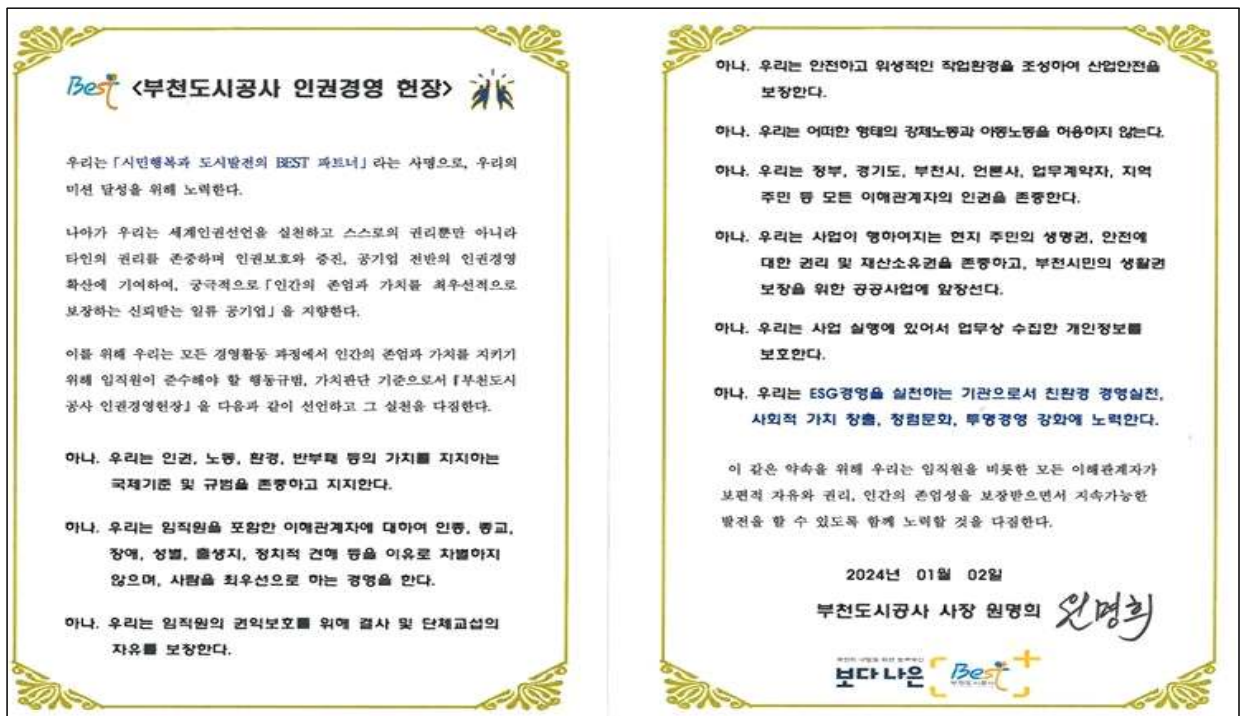
□ **공사 익명신고시스템(살며시) 구축**

- 부정·부패행위, 갑질피해신고, 인사·채용비리 등 익명신고시스템 구축

## □ 인권경영헌장 내 국제기준 지지 의지 표명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고](#) 스스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인권보호와 증진, 공기업 전반의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신뢰받는 일류 공기업을 지향한다.”

## □ 인권경영헌장



## □ 인권정책선언 제정과정 및 공개방식

- 인권경영헌장 제정: 2018. 11.
- 인권경영헌장 개정
  - 2020. 12. : 공사 새로운 미션·비전 등 반영(주거환경 개선 역할 포함)
  - 2022. 12. : 국가인권위원회 보고 지침 반영(구제절차 포함)
  - 2023. 6. : 인권 이슈의 변화 대응 및 공사 비전, 미션, 전략과제 반영
  - 2024. 1. : 인권 이슈의 변화 대응을 위한 ESG경영 실천 기관 반영
- 제정과정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참조, 초안 작성  
→ 공사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및 자문 → 인권경영헌장 확정

## ◦ 공개방식

- 기관장 공동선언
- 홈페이지 게시 및 정보공개포털 등록
- 전국 지방 공사·공단 전파 공유



### III

## 인권영향평가 관련 보고

### 1

##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및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 이행
-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여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 및 인권경영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 □ 실시계획 수립 및 이행

- 평가주관: 청렴감사팀, 각 지표별 담당자, 인권경영위원회
  - 1차 인권영향평가 지표 담당자 자체평가, 2차 인권경영위원회 최종 심의
- 평가대상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공사 경영활동 전반사항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교통사업, 개발사업, 체육사업
- 인권영향평가 추진 절차

구분	담당부서(기구)	내용	추진일정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 설계	청렴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방향, 절차 등 세부계획 마련</li> <li>평가계획, 평가지표 설계</li> </ul>	'24. 11. 8.
평가지표 검토 및 확정	청렴감사팀 (검토: 인권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경영위원회 개최, 평가지표 적정성 검토 및 확정</li> </ul>	'24. 11. 18.
평가지표 교육	청렴감사팀 지표별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별 담당자 확정 및 교육 실시</li> <li>담당자 회의</li> </ul>	'24. 11. 19.
자체평가 실시	소관부서 (총괄: 청렴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별 담당부서 자체평가 실시</li> <li>- 인권영향평가+중대성평가 실시</li> <li>평가결과 검증(평가: 총괄팀)</li> </ul>	'24. 11. 20. ~12. 2.
최종평가 및 심의	인권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평가 신뢰성 검토 등 최종평가</li> <li>권고의견 제시</li> <li>최종심의 의결</li> </ul>	'24. 12. 16.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청렴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li> <li>타 기관 전파, 홈페이지 등 공개</li> </ul>	'24. 12. ~'25. 1.



## 2 2023년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및 조치결과

### □ 권고사항 6건: 조치 완료

구분	분야	개선과제	조치결과
기관 운영	7.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협의 보상안내문에 이주자택지, 주택 등 이주자 및 생활대책 내용을 명시하는 계획 수립	◦ 조치 완료
	8. 환경권 보장	◦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위원회 개최 및 부서(팀)별 에너지절약 담당자 지정	◦ 조치 완료
개발 사업	1. 개발계획 수립	◦ 적절한 이주대책 수립	◦ 조치 완료
	6. 권리구제 절차 보장	◦ 현장에 건의함 설치하여 노동자의 불편사항 해소	◦ 조치 완료
주차 사업	5. 근로자 인권보호	◦ 주차 현업직에 맞는 구제절차 계획 수립	◦ 조치 완료
체육 사업	2. 근로자 및 이용자 인권	◦ 안전주의사항 고지 확대 운영 ◦ 저시력자 위한 안내물 게시	◦ 조치 완료

## 3 인권영향평가 실시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국가인권위원회)」 상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공사 경영활동 및 사업에 맞는 고유지표 설계
- 2019년 최초 평가 이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 사업 특성에 적합하도록 지표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
- 2024년도 평가는 2023년도 설계 지표를 기반으로 보완하여 추진
- 기관운영 평가지표: 【10개 분야】-【29개 항목】-【142개 지표】

No	분야(항목수-지표수)	No	분야(항목수-지표수)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5-30)	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2-7)
②	고용상의 비차별(3-14)	⑦	현지주민의 인권보호(2-10)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3-14)	⑧	환경권 보장(4-18)
④	강제 노동의 금지(2-12)	⑨	고객인권보호(2-8)
⑤	산업안전 보장(4-19)	⑩	정보인권보호(2-10)

◦ 주요사업 평가지표: 【교통사업분야】-【5개 항목】-【23개 지표】

No	평가항목(지표수)	주요내용
①	공정 운영(3)	• 이용자 권리 침해 방지 / 취약계층 접근 장치·매뉴얼 마련 / 사업자 선정 시 정보공개
②	사회적 약자 및 고객 이용 편의 보장(5)	• 편의시설 마련 / 사회적 약자 배려 정보 안내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시설 및 시스템 정기 점검 /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처리
③	안전보장(5)	• 시설물 안전관리 / 비상탈출구 장애물 관리 / 안전사고 보상·구제 절차 / 안전사고 대비 점검·훈련 실시 / 안전 장구 및 시설 점검
④	고객 인권 보호 및 환경보장(5)	• 개인정보 열람 가능 / 촬영 기구 및 녹화물 관리 / 수집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 대기환경에 미치는 요인 주의 / 친환경 재료 사용 및 에너지 절약
⑤	근로자 인권 보호(5)	• 야간근무자 휴게시간·시설 보장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인권침해 구제 절차 운영 / 노동자 평등 대우 / 특수건강검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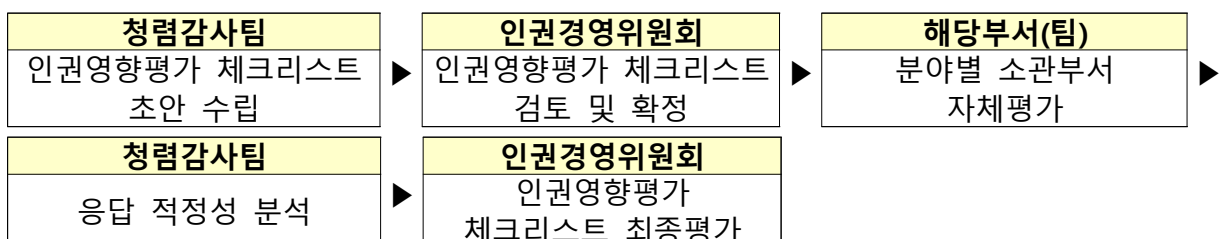
◦ 주요사업 평가지표: 【개발사업분야】-【6개 항목】-【24개 지표】

No	평가항목(지표수)	주요내용
①	개발계획 수립(3)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 선주민의 이주대책 수립 / 사업설명회 개최 사전 공고
②	용지취득 및 보상(6)	• 손실보상협의 수행 / 보상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 보상절차 관련 정보제공 / 보상물건의 객관적 선정/ 투명·공정한 보상금액 산정 / 지체 없는 보상금 지급
③	택지조성(2)	•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 / 대체시설 마련
④	보건·안전 등 현장근로여건(5)	• 안전점검 관리체계 운영 /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 / 보호장비 지급 및 관리대장 운영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 임금체불 방지 노력
⑤	환경권 보장(4)	•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실시 / 환경훼손 가능성 검토 / 부정적 환경요인 해소 노력 / 사업지구 내 문화적 가치 검토
⑥	권리구제 절차 보장(3)	• 보상 관련 구제절차 보장 / 현장노동자 권리구제 방안 마련 / 인권침해 발생 여부 모니터링/ 인권침해 구제 절차 운영

◦ 주요사업 평가지표: 【체육사업분야】-【5개 항목】-【20개 지표】

No	평가항목(지표수)	주요내용
①	공정 운영(4)	• 선발절차 및 방법 / 취약계층 동등한 신청 기회 제공 / 환불 규정 마련 / 사업자 선정 시 정보공개
②	근로자 인권(3)	• 스트레스 치료 프로그램 운영 / 강사 고충 정기적 모니터링 / 고충 발생 시 조치·규정 마련
③	이용자 인권(4)	• 재해 예방 조치 / 사회적 약자 이동권·이용권 보장 / 편의 시설물 운영 /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처리
④	안전보장(5)	• 안전·위생 정기교육 실시 / 비상탈출구 장애물 관리 / 안전사고 보상·구제 절차 / 안전사고 대비 점검·훈련 실시 / 안전 장구 및 시설 점검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4)	• 대기환경에 미치는 요인 주의 / 친환경 재료 사용 및 에너지 절약 / 개인정보 보호 / 촬영 기구 및 녹화물 관리

□ 자체 체크리스트 설계방법



□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 2024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완료: 2024. 12월 보고 완료
- 위원회별 평가분야: 검증력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내·외부 위원 교차 평가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99.6점** / 100점 (※ 전년 대비 0.4점 증가)

번호	분 야	항목	평가점수		
			2024년	2023년	증감
평균		29개	99.6	99.2	↑ 0.4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	100.0	100.0	-
2	고용상의 비차별	3	96.4	100.0	↓ 3.6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	100.0	100.0	-
4	강제 노동의 금지	2	100.0	100.0	-
5	산업안전 보장	4	100.0	100.0	-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	100.0	100.0	-
7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	100.0	94.4	↑ 5.6
8	환경권 보장	4	100.0	96.4	↑ 3.6
9	고객인권보호	2	100.0	100.0	-
10	정보인권보호	2	100.0	100.0	-

- 주요[교통]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97.8점** (※ 최초 실시)

번호	분 야	지표	평가점수		
			2024년	2023년	비고
평균		23개	97.8	-	2024 최초평가
1	공정 운영	3	100.0	-	
2	사회적 약자 및 고객 이용 편의 보장	5	100.0	-	
3	안전보장	5	100.0	-	
4	고객 인권 보호 및 환경보장	5	90.0	-	
5	근로자 인권 보호	5	100.0	-	

- 주요[개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95.8점** (※ 전년대비 0.4점 증가)

번호	분 야	지표	평가점수		
			2024년	2023년	증감
평균		24개	95.8	95.4	↑ 0.4
1	개발계획 수립	3	100.0	83.3	↑ 16.7
2	용지취득 및 보상	6	100.0	100.0	-
3	택지조성	2	100.0	100.0	-
4	보건·안전 등 현장근로여건	5	100.0	100.0	-
5	환경권 보장	4	100.0	100.0	-
6	권리구제 절차 보장	4	75.0	75.0	-

◦ 주요[체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97.5점 (※ 전년대비 3.4점 증가)

번호	분야	지표	평가점수		
			2024년	2023년	증감
평균		20개	97.5	94.1	↑ 3.4
1	공정 운영	4	100.0	100.0	-
2	근로자 인권	3	100.0	80.0	↑ 20.0
3	이용자 인권	4	100.0	80.0	↑ 20.0
4	안전보장	5	90.0	100.0	↓ 10.0
5	지역주민 환경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4	100.0	100.0	-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평가의견

평가분야	점수	평가의견
기관운영	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규정 개정, 인권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자체심사, 인권 침해 행위대응을 위한 인권구제절차 운영 등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과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을 기반으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음</li> <li>▶ 공사는 채용, 인사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균등대우를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정규직 직원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li> <li>▶ 노사가 상생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li> </ul>
교통사업	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업의 인권영향평가는 총 5개 분야로 공정운영, 사회적 약자 및 고객 이용 편의 보장, 안전보장, 근로자 인권 보호의 분야는 우수하게 평가됨. 다만, 고객 인권 보호 및 환경보장 분야에서 촬영 기구 및 녹화물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제공 시 관리 및 방법에 대한 매뉴얼 보완이 필요해 보임.</li> <li>▶ 처음 시행한 사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교통사업과 관련한 안전보장, 고객 인권보호, 근로자 인권보호 부분이 매우 우수하여 이를 위한 공사의 지속적인 노력 및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음.</li> </ul>
개발사업	9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사업의 인권영향평가는 총 6개 분야로 개발계획 수립, 용지취득 및 보상, 택지조성, 보건·안전 등 현장근로여건, 환경권 보장의 분야는 우수하게 평가됨. 다만, 권리구제 절차 보장 분야에서 현장 근로자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모니터링 부분의 실시가 미흡해 보임.</li> <li>▶ 원하청 및 하도급 업체 등의 사각지대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의미 있음. 다만, 안전점검 분야는 감리단 쪽에 일임한 사항이라 과도하게 개입하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모니터링 실시 대상 범위를 분명히 하여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음.</li> </ul>
체육사업	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사업의 인권영향평가는 총 5개 분야로 공정운영, 근로자 및 이용자 인권, 지역주민 환경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의 분야는 우수하게 평가됨. 다만, 안전보장 분야에서 비상탈출구 장애물 관리의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li> <li>▶ 해당 문제는 입주단체 등의 물품보관 장소의 부족 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수 있기에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li> </ul>

□ 주요 인권이슈 도출(중대성 평가)

◦ 주요 인권경영 이슈 선정 방법

점수 분포	총점 11점 이상	총점 6~10점	총점 5점 이하
평가 결과	상	중	하

- 기관운영 중대성평가 결과 '상'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기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산업안전 보장-작업장 안전',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개선과제로 선정
- 주요사업 중대성평가 결과 '상'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기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교통사업-고객 인권 보호 및 환경보장', '개발사업-권리구제 절차 보장', '체육사업-안전보장'을 개선과제로 선정

◦ 주요 인권이슈: 5건(기관운영 2건, 주요사업별 각 1건)

분야	항목	추진목표	개선계획
기관 운영	5-1. 작업장 안전	• 안전보건 공사 교육 시스템 도입 및 표준작업 매뉴얼 절차 수립	• 사업장 맞춤형 교육 및 작업 매뉴얼 도입
	7-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 중요도 인식 확대	• 직원 대상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 및 토론 진행(독서동아리 독서 주제 선정)
교통	4. 고객 인권 보호 및 환경보장	• 고객 인권보호 강화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관련 매뉴얼 수립	• 촬영기구 및 녹화물 관리 관련 매뉴얼 수립
개발	6. 권리구제 절차 보장	• 도시개발부 관리 현장의 노동자 인권 보호	• 분기별 정기 안전·보건 점검 시 노동자 인권 모니터링 실시
체육	4. 안전보장	• 화재 등 긴급상황 대비 이용자 안전보장	• 비상구 동선 내 적치물 점검 및 제거

◦ 주요 인권경영 이슈 실행

- 공사 2025년 인권경영 기본 계획 수립 시 개선과제 및 권고사항 반영

□ 이해관계자 요청사항 반영

◦ 주요사업 교체 평가: 주차사업 → 교통사업으로 변경

(※ 공사의 주요사업 중 지역주민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사업으로 분석되어 사업 변경)

◦ 인권경영실천협의체 및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지표 검토 의견 반영

□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 리스크 도출: 총 6건

분야	항목 (담당부서)	추진목표	개선계획
기관 운영	2-1. 고용상 비차별 (경영지원부)	• 비정규직 차별 진단 개선사항 이행	• 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 중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 개정
기관 운영	5-1. 작업장 안전 (기획감사실)	• 안전보건 공사 교육 시스템 도입 및 표준작업 매뉴얼 절차 수립	• 사업장 맞춤형 교육 및 작업 매뉴얼 도입
	7-2. 지역주민의 지적 재산권 보호 (기획감사실)	• 지적재산권 보호 중요도 인식 확대	• 직원 대상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 및 토론 진행(독서동아리 독서 주제 선정)
교통	4. 고객 인권 보호 및 환경보장 (스마트도시사업부)	• 고객 인권보호 강화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관련 매뉴얼 수립	• 촬영기구 및 녹화물 관리 관련 매뉴얼 수립
개발	6. 권리구제 절차 보장 (도시개발부)	• 도시개발부 관리 현장의 노동자 인권 보호	• 분기별 정기 안전.보건 점검 시 노동자 인권 모니터링 실시
체육	4. 안전보장 (체육/레포츠)	• 화재 등 긴급상황 대비 이용자 안전보장	• 비상구 동선 내 적치물 점검 및 제거

※ 개선과제는 인권영향평가 및 중대성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과제로 2025년 공사 인권경영 기본 계획 수립 시 반영 및 공사·부서별 주요 인권 이슈로 선정하여 우선 해결

## IV 구제절차 관련 보고

### 1 인권침해 구제절차

□ 운영근거: 공사 「인권경영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6장 인권침해 구제절차 방법 등 명시
  - 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방법, 처리절차, 신고인의 신분보장 등 규정

□ 인권침해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구분	신고방법
인권침해 유형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신고 대상	▶ 내부 직원, 고객,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 규정상 이해관계자
온라인	▶ 공사 홈페이지 인권경영 카테고리 내 「인권침해 신고」 채널 이용 ( <a href="https://www.best.or.kr/fmcs/796">https://www.best.or.kr/fmcs/796</a> )
인권경영 담당부서 (청렴감사팀)	▶ 신고서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문 제출 등) ▶ 온라인 신고, 전화, 대면상담 등 * 인권상담원: 인권경영 담당자 및 청렴감사팀장

## □ 처리절차

구제절차	처리내용
<b>STEP1</b> 인권침해 여부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침해 여부 상담</li> <li>인권침해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b>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b> 후 처리</li> </ul>
<b>STEP2</b>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공사 홈페이지 인권경영 카테고리 내 '인권침해 신고'채널 이용</li> <li>(인권경영 담당부서) 신고서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문 제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침해 신고서 작성 후 신고</li> <li>신고내역 확인 및 접수 후 대장에 기록</li> </ul> </li> </ul>
<b>STEP3</b> 인권침해행위 선별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의 현행 구제절차에 부합할 경우 <b>주관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충사항,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피해신고 등</li> </ul> </li> <li>공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b>국가인권위원회 이관 또는 진정·민원절차 등 안내</b></li> <li><b>조사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b></li> </ul>
<b>STEP4</b> 인권침해 사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위원회의 조사 개시</b>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 /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li> </ul>
<b>STEP5</b> 인권경영위원회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침해행위자에 대해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 공사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인에 결과 안내</li> </ul> </li> <li>사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li> </ul>
<b>STEP6</b> 시정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침해 사실 및 <b>위반사항에 대한 시정</b></li> <li>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b>인사 및 재발 방지 교육 등 조치</b></li> </ul>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정
  - 인권침해 행위가 구체적 사실관계(범죄)에 해당될 경우 내부 절차와 별도로 외부기관 등의 구제수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 안내
- 접수 및 조사
  - 구제대상인이 인권침해로 확인될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 심의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조치, 결과 통보

## 2 구제절차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

### □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

<b>담당부서 주요기능</b> *기획감사실(청렴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침해 상담 및 조정</li> <li>인권침해 신고접수</li> <li>인권침해 조사 대상 선별</li> <li>인권경영위원장에게 신고내용 보고</li> <li>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구제절차 논의</li> <li>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li> </ul>
-----------------------------------	---

구제기구 주요 기능 *인권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침해 접수사건 조사, 심의 및 의결</li> <li>▸ 인권침해 행위 금지 권고,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요구</li> <li>▸ 사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 신고</li> </ul>
------------------------	---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외부 위원 (4명)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li> <li>▸ 前 부천시노동인권위원회 부위원장</li> </ul>	위원장 (노조추천)
	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부천시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li> <li>▸ 現 부천시공정무역위원회 부위원장</li> </ul>	시민활동가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부교수)</li> <li>▸ 現 인하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li> </ul>	교수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국립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부교수)</li> <li>▸ 現 한국소비문화학회 총무이사</li> </ul>	교수
내부 위원 (3명)	이○○	▸ 부천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당연직
	이○○	▸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당연직
	강○○	▸ 부천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장	당연직

□ **인권침해 구제업무 매뉴얼 개선: 2024. 2. 20.**

- 개선사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경영활동 제도화
- 개선내용: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매뉴얼 제작

□ **갑질 유형별 대응 매뉴얼 개선: 2024. 2. 20.**

- 추진사유: 임직원의 갑질에 대한 이해 및 대응 요령 안내
- 개선내용: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안내 및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

□ **익명신고시스템(살며시) 도입·운영: 2024. 10. 10.**

- 추진사유: 내부신고 활성화 유도하여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
- 신고대상: 부정·부패행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갑질피해신고 등

□ **인권경영시스템 재인증: 2024. 11. 8.**

- 취득사유: 인권경영의 체계적 객관적 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인증
- 인증심사: 1단계(성숙도 평가) → **2단계(인권경영시스템 적합도 평가)**
- 인증기관: 한국경영인증원


□ **인권경영규정 개정: 2024. 12. 26.**

- 개정사유: 인권경영위원회 수행 업무 명확화
- 개정내용: 개정 전 인권침해행위 → 개정 후 **인권침해 행위 조사 및 구제 심의**



### 3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홍보)

#### □ 공사 홈페이지 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사 홈페이지 &gt; 정보마당 &gt; 인권경영</li><li>▶ 연중 계속 게시</li><li>▶ (<a href="https://www.best.or.kr/fmcs/796">https://www.best.or.kr/fmcs/796</a>)</li><li>▶ 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구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24. 2.</li></ul>	
---	--

#### □ 부서별(팀) 인권지킴이 지정 및 활동

- 부서별 인권지킴이 지정: 9명
- 활동내용: 인권경영 교육, 전파, 캠페인 등 인권경영 관련 활동 실시

### 4 진정한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 □ 인권경영규정 내 신고인의 신분보장 명시

<p><b>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b></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위원회 위원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li>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그 사실을 타인에게 암시하거나 널리 알려서는 아니 된다.</li><li>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i><li>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li></ol>
---

### 5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사항

#### □ 인권침해 구제 절차 및 구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24. 2.

- 제작목적: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경영활동 제도화
- 매뉴얼 내용
  - 구제 절차: 구제 전담기구, 신고, 신고에 따른 구제 절차
  - 구제 매뉴얼: 관리자 및 피해자 조치사항, 행위자 조치사항 및 사후 조치사항

- 갑질 유형별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24. 2. 20.**
  - 제작목적: 임직원의 갑질에 대한 이해 및 대응 요령 안내
  - 매뉴얼 내용
    -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및 근절 지침 안내, 피해자 및 공사 세부 대응 요령, 갑질신고센터 운영
- 익명신고시스템(살며시) 도입·운영: 2024. 10. 10.**
  - 추진사유: 내부신고 활성화 유도하여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
  - 신고대상: 부정·부패행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갑질피해신고 등

## 6 2024년 구제절차의 운영성과

- 접수건수와 내역, 처리절차와 결과: 해당없음**

## V 인권경영 교육 관련 보고

### 1 인권경영 규정 및 전담부서, 담당자

- 인권경영규정 내 인권교육 명시**

<b>제16조(인권교육)</b>
① 공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인권경영 교육 전담부서: 경영지원부 인사팀 교육담당자**
- 인권경영 담당자: 기획감사실 청렴감사팀 인권경영 담당자 지정**

### 2 인권경영 교육 운영 성과


- 인권침해 방지 교육 추진 실적**

추진결과					
구분	인권교육	4대폭력 예방	갑질괴롭힘 방지	인식개선	인권관련 활동
내용	인권의식 확립	성희롱·성폭력 등	갑질예방	장애인 인식 등	캠페인 등
실적	427명	421명	444명	504명	48명

<p>◦ <b>인권의식 확립을 위한 인권경영 교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 육 명: 인권경영 온라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길라잡이 / 공정사회 및 인권사회 구현</li> </ul> </li> <li>▶ 교 육 일: (상반기) 2024. 6월 / (하반기) 2024. 12월</li> <li>▶ 이수인원: 427명</li> <li>▶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및 부서별 자체 집합교육</li> <li>▶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인권경영의 이해, 인권경영체계구축, 인권영향평가 등</li> <li>- 하반기: 공정한 세상, 기업과 인권, ESG와 인권 등</li> </ul> </li> </ul>	
<p>◦ <b>직장 내 4대폭력 예방 교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 육 명: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li> <li>▶ 교 육 일: (1차) 2024. 4. 29. / (2차) 2024. 5. 28. ~ 5. 31.</li> <li>▶ 이수인원: (1차) 15명, (2차) 252명</li> <li>▶ 교육방법: 외부 전문강사 / 집체교육</li> <li>▶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관리자: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개념,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 등</li> <li>- (2차)직 원: 성평등 공사로 함께 가는 방법, 디지털 성범죄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 육 명: 전직원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li> <li>▶ 교 육 일: 2024. 9. 30.</li> <li>▶ 이수인원: 154명 (기관장 참여)</li> <li>▶ 교육방법: 외부 전문강사 / 집체교육</li> <li>▶ 교육내용: 성매매·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이해,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등</li> </ul>	
<p>◦ <b>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 교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 육 명: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 교육</li> <li>▶ 교육기간: 2024. 10. 7. ~ 11. 30.</li> <li>▶ 이수인원: 722명(중복인원 포함)</li> <li>▶ 교육방법: 집체교육(444명) / 온라인교육(278명)</li> <li>▶ 교육내용: 갑질의 유형 및 유형별 사례, 갑질 예방 실천 방안 등</li> </ul>	
<p>◦ <b>아동·장애인 인권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터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 육 명: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li> <li>▶ 교 육 일: 2024. 7. 29.</li> <li>▶ 이수인원: 118명 (기관장 참여)</li> <li>▶ 교육방법: 외부 전문강사 / 집체교육</li> <li>▶ 교육내용: 장애인고용법 관련 법령 이해, 장애 유형 이해, 직장 내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 긍정적 인식 제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 육 명: 아동·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장애인 학대 예방교육</li> <li>▶ 교육기간: 2024. 10. 2.~10. 31.</li> <li>▶ 이수인원: 504명</li> <li>▶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및 부서별 자체 집합교육</li> <li>▶ 교육내용: 아동·장애인 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주요 사례, 아동·장애인 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li> </ul>	

<p>◦ <b>인권경영 담당자 집중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전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 육 명: 인권지킴이&amp;독서동아리「안다미로」 인권독서토론회</li> <li>▶ 교 육 일: 2024. 6. 28.</li> <li>▶ 이수인원 및 교육방법: 10명 / 집합교육</li> <li>▶ 교육내용: 인권 도서 발제 및 인권경영 동영상 시청, 공사 내 인권관련 내부 이슈 토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 육 명: 인권경영시스템 구축 교육 및 인권영향평가 지표 교육</li> <li>▶ 교 육 일: 2024. 10. 28. / 2024. 11. 19.</li> <li>▶ 이수인원 및 교육방법: 5명(10월), 11명(11월) / 집합교육</li> <li>▶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시스템 현장심사 주요 대응 내용 공유 및 논의</li> <li>- 인권영향평가 지표 설계방법, 주요사업 선정 사유 및 지표 적합성 검토</li> <li>- 지표별 인권영향평가 평가서 작성방법, 증빙자료 취합 및 제출방법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 육 명: 인권경영실천협의회 연합 청렴·인권 도전! 골든벨</li> <li>▶ 교 육 일: 2024. 12. 6.</li> <li>▶ 이수인원: 68명(공사 참여 22명) / 인권실천협의회 합동(3개 기관)</li> <li>▶ 교육방법: 참여형 캠페인</li> <li>▶ 교육내용: 청렴 플로깅 행사, 청렴·인권 관련 참여형 퀴즈 풀이</li> </ul>	

□ **감정노동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직원 인권 보호**

<p><b>감정노동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일심지원센터 업무협약(MOU) 체결(2023. 3. 21.)</li> <li>▶ 임직원 건강증진, 심리상담, 인적·물적 지원 협력</li> <li>▶ 감정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증진 프로그램 51명(5회)</li> </ul> </li> </ul>	 <p>허브테라피</p>
---------------------------------	--	--

**VI 종합적 평가, 공개의 원칙 및 소통**

**1 인권경영 전체과정(성과) 종합적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준용,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최종 보고 완료
  -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준용,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 작성
  - 인권경영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별 인권지킴이 활동 등 인권경영을 중요시하고 체계적 추진
  -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부, 익명신고시스템(살며시) 구축·운영

-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규정 및 구제절차 마련 등 인권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인권경영 실천
- 인권경영의 체계적·객관적 관리를 위하여 '인권경영시스템 재인증'

## 2 미진한 점, 차년도로 넘겨진 인권이슈

### □ 전년도 미진한 사항 개선

2023년 미진한 사항	2024년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지킴이 활동 부진</li> <li>- ESG 인권경영의 적극적 실천 및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부서별 인권지킴이 지정하였으나 활동 미흡</li> <li>- 2024년 정기회의 및 자체 활동 추진</li> <li>- 인권경영실천협의체 합동 캠페인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회의 개최: 2024. 6. 4.</li> <li>- 인권지킴이 역할 안내 및 2024년 인권 경영 활동계획 공유</li> <li>▶ 인권지킴이&amp;독서동아리 인권독서토론회 실시: 2024. 6. 28.</li> <li>▶ 인권경영실천협의체 3개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2024. 12. 6.</li> <li>- 청렴 플로깅 및 청렴·인권 도전 골든벨</li> </ul>

### □ 보완, 개선 사항

-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개선과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인권 침해 요소 제거
- 대면 교육 등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 감수성 향상 등 인권 경영 실행 노력 강화

## 3 외부 이해관계자에 공개된 방법

### □ 공사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 게시판 개설하여 정보 공개

구분	게시주소(URL)	공개 정보
인권경영현장	<a href="https://www.best.or.kr/fmcs/345">https://www.best.or.kr/fmcs/345</a>	인권경영현장 전문
인권경영규정	<a href="https://www.best.or.kr/fmcs/346">https://www.best.or.kr/fmcs/346</a>	공사 인권경영규정(개정사항 포함)
인권경영정보	<a href="https://www.best.or.kr/fmcs/347">https://www.best.or.kr/fmcs/347</a>	인권영향평가보고서, 인권존중 캠페인 추진결과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	<a href="https://www.best.or.kr/fmcs/796">https://www.best.or.kr/fmcs/796</a>	인권침해 유형, 신고처 등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등록

- 인권경영 성과 등을 사전정보로 등록,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 공문발송을 통한 인권경영 실천 사항 전파

-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인권경영 종합 보고서 등 타 공사·공단 전파

#### 4 제3차 검증 여부, 검증기관 결과

---

□ 인권경영 추진성과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및 검증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독립된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시 성과 보고
  - 2024년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인권경영 추진실적 보고
- 인권영향평가 관련 인권경영위원회 지표 적정성 검토, 최종 검증 및 심의
  - 검증력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내·외부 위원 교차 평가 실시
  -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지표 적합성 검토(11.18.) / 최종 심의(12.16.)

#### 5 제한적으로 공개된 경우, 그 사유

---

□ 인권경영 보고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공개된 경우: 해당없음

#### 6 보고에 대한 소통 결과

---

□ 경영평가 '윤리경영' 지표에 포함되어 평가

- 종합평가결과: 가중치 4점 중 3.72점(평점 93.0점) / 50개 기관 중 1위
- 종합의견
  - (잘된 점)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의 형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였다고 판단됨. 인권경영실무협의체, 위원회 운영 등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가치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함.
  - (미흡한 점)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매뉴얼을 구체적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사법적 및 외부절차 측면은 미흡하며,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별도의 관리자 교육 실시를 권고함. 끝.